



##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과 시사점

최근 정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이하 '본건 로드맵')은 기업들의 가상 자산 거래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본건 로드맵의 배경

2025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는 글로벌 경향이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중심이 되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자산 지갑 등 신생 사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반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은 어려워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 7.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 제도는 갖추었기에 2단계 입법(사업자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 등)으로 나아갈 차례이고, 이를 위하여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본건 로드맵의 핵심 내용

가.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1단계에서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이 완화됩니다.

법집행기관(경찰, 국세청 등)의 경우,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압류한 가상자산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이 필요하고, 이에 2024. 말경부터 계좌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을 위한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되, 가상자산 종류, 현금화방법, 회계지침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한 후 2025년 2분기 이후부터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2025년 2분기부터 수수료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운영비(인건비, 세금 등)로 사용하기 위한 매도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본질적으로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자기매매 등)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나.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2025년 하반기 이후)**

2단계에서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약 2,500개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개사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이 완화됩니다.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될 예정인데, 광범위한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이 먼저 마련될 것이고, 세부심사를 거쳐 계좌 발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에는 예컨대 (1)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를 승인하거나, (2) 지갑주소 및 소유주를 검증하거나, (3) 제3자의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하거나, (4)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투자자공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적인 가상자산 거래는 미국 등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금융부문 토큰화 및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중장기 검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법인까지 가상자산 거래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위 1단계 및 2단계의 경과를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영업행위 규제 등을 위한 2단계 입법의 시행, 국경간 가상자산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국환거래법 정비,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 마련 등이 선결된 이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3. 본건 로드맵의 시사점**

#### **가. 국내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 증대**

그동안 국내 법인은 국내의 규제로 인하여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건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

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산업에 접근할 기회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자금흐름을 이용할 기회까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나.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본건 로드맵에 의하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그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의미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건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글로벌 환경과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국내외 환경 및 정부의 정책 발표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참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계의 최신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관련 구성원

#### 최영노 변호사

T 02.3479.7876  
E genie7@barunlaw.com

#### 한서희 변호사

T 02.3479.2351  
E suhhee.han@barunlaw.com

#### 마성한 변호사

T 02.3479.7857  
E seonghan.ma@barunlaw.com

#### 김추 변호사

T 02.3479.2483  
E chu.kim@barunlaw.com

#### 이규철 변호사

T 02.3479.7858  
E gyuchul.lee@barunlaw.com

#### 민경현 변호사

T 02.3479.5771  
E kyunghyun.min@barunlaw.com

#### 이철훈 변호사

T 02.3479.2431  
E chulhoon.lee@barunlaw.com

#### 이용준 고문

T 02.3479.7817  
E yongjun.lee@barunlaw.com